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1. 9 선고 2019가단15381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1. 9. 7.

판 결 선 고 2021. 11. 9.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1,400,996원 및 그 중 1,198,501원에 대하여는 2019.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3,596,165원에 대하여는 2019.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 3,948,827원에 대하여는 2019.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사이에 2017. 11.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은 피고 B에게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 11. 14. 접수 제4187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

1) D 주식회사는 2015. 5. 28. 피고 B에게 금 1,400만 원을 대출기간 36개월, 대출금리 연 1.9%, 연체금리 연 24%로 하여 대여해주었다. 또한 피고 B는 2015. 6.경 E 주식회사의 신용카드 회원가입 신청을 하면서 신용카드회원 약관에 따라 각 조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그런데 피고 B는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 및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등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E 주식회사는 2018. 4. 6.경 D 주식회사에게 피고 B에 대한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8. 4. 10. 피고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이후 D 주식회사는 2018. 9. 17. 원고에게 피고 B에 대한 위 채권들을 모두 양도하였고, 양도통지 사무를 위임받은 원고는 2018. 10. 10. 피고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피고 B에 대한 위 채권들에 대한 내역은 2019. 11. 11. 기준으로 ① 차용금에 대한 채권액은 1,601,216원(= 원금잔액 1,198,501원 + 인수전 이자잔액 58,335원 + 인수후 이자잔액 344,380원)이고, ② 신용카드 사용대금에 대한 채권액은 4,142,401원(= 원금잔액 3,596,165원 + 인수전 이자잔액 417,070원 + 인수후 이자잔액 129,166원)이며, 그 연체이율은 연 3%이다.

2) D 주식회사는 피고 B에게 2016. 4. 19. 800만 원을 대출기간 36개월, 금리는 20.9%, 연체이자율은 27.4%로 하여 대여해주었다.

그런데 피고 B는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D 주식회사는 2018. 10. 16.

원고에게 피고 B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양도통지 사무를 위임받은 원고는 2018. 11. 1. 피고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피고 B에 대한 위 차용금 내역은 2019. 11. 11. 기준으로 5,657,379원(= 원금잔액 3,948,827원 + 인수전 이자잔액 502,072원 + 인수후 이자잔액 1,206,480원)이다.

나. 피고들 사이의 부동산 처분행위

피고 B는 2017. 11. 13. 배우자인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자신의 소유인 1/2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11. 14.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들의 이혼

- 1) 피고들은 2003. 4. 2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슬하에 자녀 둘(딸 F, G)을 두었다.
- 2) 피고들은 2017. 11. 13. 협의이혼신고를 하여 이혼하였고, 자녀들은 피고 C이 양육하기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함께 살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양수금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양수금 11,400,996원(= 2015. 5. 28.자 차용금 관련 1,601,216원 + 신용카드 사용대금 관련 4,142,401원 + 2016. 4. 19.자 차용금 관련 5,657,379원) 및 그 중 2015. 5. 28.자 차용금의 원금잔액 1,198,501원에 대하여는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9.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24%, 신용카드 사용대금의 원금잔액 3,596,165원에 대하여는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9.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3%, 2016. 4. 19.자 차용금의 원금잔액 3,948,827원에 대하여는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9.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27.4%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원고는 피고 B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피고 C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피고 B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2)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 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등 참조).

3) 먼저 이 사건 증여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2003. 4. 2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가, 2017. 11. 13. 협의이혼 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B가 협의이혼신고를 한 날인 2017. 11. 13. 피고 C에게 함께 거주하던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소유인 1/2 지분을 증여하고, 현재까지 피고 C과 그 자녀들이 위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을나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들은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017. 11. 13. 당시 14년 정도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의 2017. 2. 9. 취득 당시의 매매가는 1억 2,300만 원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인 2017. 11. 13.의 시세도 같을 것으로 추정되고, 위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7. 4. 11.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H, 채무자 피고 C, 채권최고액 1,87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실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1,700만 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가액은 1억 600만 원인 점, ③ 피고 B는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 등의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1/2)을 피고 C에게 증여하되, 피고 B는 자신 명의의 강원 평창군 I 및 J 임야 1,140만 원 상당과 피고 C으로부터 재산분할금으로 지급받은 1,000만 원을 보유한 점, ④ 피고들의 부부생활 중에 피고 C이 경제활동을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도 피고 C이 일하여 얻은 근로소득과 위 H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기초로 마련되었으므로 피고 C의 재산분할 비율이 피고 B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나아가 피고들의 이혼에 따른 자녀들의 양육책임을 피고 C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모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목포시 , L에 있는 M아파트 N동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목포시 O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 아파트

1층 690.18 , 2층 내지 15층 각 675.5 , 지하층 대피소 679.5

부속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 주차장 1248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 주차장 1248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경비실 7.29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경비실 7.29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경비실 7.29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경비실 7.29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경비실 6.93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노인정, 관리사무실, 지하전기실 및 대피소

1층 노인정 134.55 , 2층 관리사무소 134.55 , 지하 전기실 및 대피소 930.87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가스정압실 12.6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전라남도 목포시 대 2890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5층 P호 철근콘크리트조 84.97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28907분의 34.289 끝.

